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6호)

제 안 설 명



2021. 6. 2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평 남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평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지난 6월 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미국·유럽·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1천만 명을 넘어선 반려인구의 증가와 국민정서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